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(이명녀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 1567 발의년월일: 2019. 5. 31.

발 의 자:이명녀, 신성봉, 김기환,

김지근, 권태호, 문희성,

노세영, 박경흠, 안영호,

박채연, 강혜경

1. 폐지이유

가. 「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」제정으로 의정 자문단과 일부 기능이 중복되며,

나. 현재 의정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어진 「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「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」 폐지

3. **폐지조례안**: 따로 붙임

6 (제216회-의회운영위제1차부록)

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

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

(제정) 2005.03.21 조례 제 325호 (일부개정) 2006.10.16 조례 제 373호 (일부개정) 2009.04.06 조례 제 459호 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)

(일부개정) 2009.12.28 조례 제 496호 (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) (일부개정) 2011.03.14 조례 제 539호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중구(이하 "구"라 한다)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고 울산광역시중구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는 주민을 의회의정음부즈만(이하 "음부즈만"이라 한다)으로 위촉하여 구 행정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불합리한 사항이나 지역 여론을 청취 의회에 개선 의견을 제출하여 의정활동을 도움으로써 의회가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열린 의정활동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기능과 역할) 옴부즈만은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시책중 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개선·건의사항 등 의견을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의원(이하 "의원"이라 한다)의 자문에 응한다.
 - 1. 행정착오로 인한 주민의 고충이나 불편사항
 - 2.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이나 불합리한 제도 개선사항
 - 3. 지역개발이나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
 - 4. 민원신청시 이유없이 접수를 거부하거나 불필요한 보완 요구사항
 - 5. 집단민원 발생소지가 예상되는 사항
 - 6.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요구가 있거나 부조리에 관한사항
 - 7.기타 의정활동에 반영해야 할 사항으로서 의원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
- **제3조(기관의 협조)** 의회 또는 구청 및 소속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은 제2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옴부즈만의 활동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제4조(활동 제한)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은 제한한다.<개정 2009.4.6>
 - 1. 개별 법령의 규정에 의거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
 - 2. 행정심판 또는 소송에 계류중이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
 - 3. 개별 법령의 규정에 의거 의회가 관여할 사무가 아닌 사항
 - 4. 광역시 또는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처리 신청을 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
- 제5조(구성) 옴부즈만은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원별 1명과 직능별 대표(법률전문가, 회계전문가, 건축설계전문가,사회복지전문가 등) 4명 이하로 구성한다.<개정 2006.10.16><개정 2009.4.6>

- 제6조(자격) 옴부즈만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.
 - 1.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
 - 2. 자원봉사자로서 무보수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
 - 3. 실질적으로 여론을 수렴 할 수 있는 자
 - 4.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고 성실한 자
- 제7조(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) 옴부즈만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의정옴부즈만 심사위원회(이하 "심사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1. 심사위원회는 부의장, 상임위원장 등 6인으로 구성하며 부의장이 위원장이 된다.
 - 2. 간사는 의사주무관이 된다.<개정 2011.3.14>
- 제8조(위촉) 의회의장(이하 "의장"이라 한다)은 심사위원회에서 옴부즈만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.<개정 2011.3.14>
- 제9조(해촉) 심사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옴부즈만을 해촉하여 야 한다.<개정 2009.4.6>
 - 1. 타 선거구 관할지역으로 거주지를 변경하여 옴부즈만 활동을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<개정 2006.10.16>
 - 2. 옴부즈만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
 - 3. 질병 등 기타의 사유로 옴부즈만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때
 - 4. 당해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때
- 제10조(임기)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전·후반기 의장단 임기와 맞추어 위촉한다.<개정 2006.10.16>
- **제11조(회의)** 옴부즈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, 임 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수시로 개최한다.
- 제12조(결과 통보) 의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<개정 2011.3.14>
- 제13조(옴부즈만의 의무) 옴부즈만은 그 지위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를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며, 그 지위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.
- 제14조(신분증의 발급) ①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옴부즈만 신분증의 발급은 「울산광역시중구지방의회의원 신분증 규칙」을 준용한다.<본조신설 2011.3.14>
- 제15조(수당 등) 옴부즈만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의장의 요청에 의거 출장시에는 예산의 범위안

에서 「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개정 2009.12.28><개정 2011.3.14>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개정 2011.3.14>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<2006.10.16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<2009.4.6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)〈개정 2009.12.28 조례 제496호〉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부터 ②까지 생략

③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 중 "「울산광역시중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」를 "「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"로 한다.

④부터 32까지 생략

부칙<2011. 3. 14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